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23 선고 2023가단102689 판결 [부동산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대리인 B, C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3. 2. 13. 접수 제163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9. 10. 어선 등록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372,54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0. 13. 원고에게 과소 신고를 이유로 취득세(가산금 포함) 2,480,280원, 농어촌특별세(가산금 포함) 227,3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3. 2. 10.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인 전남 영광군 D 대 681㎡ 중 340/68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03. 2. 1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631호로 위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어선 등록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당시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원고가 당시의 과세표준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가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여기에 사전통지의무의 불이행, 처분이유 제시의무의 불이행, 처분문서 통지의무의 불이행 등 하자도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1) 원고는 당시의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정확히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표준 적용의 잘못이나 사전통지의무의 불이행 등 절차적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2)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이처럼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등기도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전라남도 영광군 대지 681㎡의 340㎡. 끝.

